#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91 발의연월일: 2024. 2. 4.

발 의 자: 김문수 · 박지원 · 이광희

이수진 • 허성무 • 정일영

한준호 • 박희승 • 이병진

김우영 · 신정훈 · 정성호

강준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도지사에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도가 일부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영 자금 지원의 범위와 종류에 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같은 핵심적인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그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광역 이동 서비스와 24시간 운행이 제약되면서 교통약자들은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조제8항).

또한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임차·바우처 택시)의 운행 및 이용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 법률 제 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항 중 "설치·운영"을 "설치와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와 도의 보조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동차"를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그 밖에 제1항"으로,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을 "운행"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1 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⑦ (생 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 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 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 ----- 설치와 운영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소요 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 의 인건<u>비 등 운영</u>---------- <u>지원</u>하여야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한다. 이 경우 국가와 도의 보 조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⑨ ~ ⑫ (생 략) ⑨ ~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 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 원) ① -----·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 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 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 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 ---- <u>자동</u>차(이하 "택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 시"라 한다)-----

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 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 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u>운행</u>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u>.</u>
②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
<ul><li>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li></ul>
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
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
다.
 ③ 그 밖에 제1항 운
<u> </u>
<u>~</u>